

■ 붙임자료 2 :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

1. 序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부실함과 재조사의 필요성

최근 우리법원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탄압 의혹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의혹까지 범상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몇 달 지속되어온 논란 끝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난 4월 18일(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원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미진하며, 특히 구체적인 책임소재의 규명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불분명하여 흠결이 많다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평가와 불만은 법원 외부에 시민사회와 언론 뿐 아니라 법원 안에서도 적지 않은 법관들도 법관회의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었던 법원 내 일련의 사건들이 일부 법관들의 우발적인 행태에 기초한 ‘사고’로 파악할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법관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블랙리스트의 사법부 판본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 및 제안만으로는 최근 불거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충분히 규

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 반복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법원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조치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 대법원이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법원 측에서 해당 사안이 불거진 기원과 원인 그리고 대처한 경과에 대하여 전면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가져야할 원칙과 조사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2. 대법원 재조사위원회의 발족 및 구성의 원칙

우선 법원은 조속히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조사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 그런데 종래 진상조사위원회가 부실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원인 중 하나로서 애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만 구성된 탓에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외에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위원회가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었기에, 조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새롭게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원 법원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한, 재조사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려면, 적어도 조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요 재조사대상

가.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내에 법관들을 뒷조사한 문건 목록 등이 있었으며, 최근 해당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된 컴퓨터 및 이메일 서버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이 자신의 권한 없음 등을 이유로 거부했기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조사거부의 구체적인 논거가 박약하다는 점은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다. 재조사위원회는 임종현 전 대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6년도 기획 제1심의를관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주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만이 법원에 대한 각종 의구심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조건 없이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건

법원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전방위적 권한남용이 돋보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대체 왜 이규진 전 위원이 이토록 권한 없이 활동했는지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왜 이에 대하여 묵인하였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재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전 위원의 이른바 ‘대책문건’ 작성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 지시 등이 어떤 목적 하에 누구의 지시로 이행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규진 전 위원의 경우 현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상조사보고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응당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책임소재에 관한 진실규명의 건

종전 진상조사보고서는 법원행정처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한 점 의혹을 해소한 바가 없다. 단지 임종헌 전 차장이 법관 재임용신청을 철회했을 뿐이다. 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각종 의혹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주요 인사들이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및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각종 법관 사찰, 인사 방침 등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종전에는 이 두 대법관에 대해서 서면조사로 갈음한 전철을 밝아서 안 될 것이다.

4. 대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및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에 관한 입장 표명 촉구의 건

현재 대법원은 진상조서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대응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조사와 함께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표명 등의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성역 없는 조사 이후에 관련 사실의혹의 규명에 따라서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종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우선 법관들의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의 공론화 보장을 위해서 1) 법관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자율성 보장, 2) 법관들의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공론화 보장 3) 법원 내에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를 제안한 바가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방안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즉 1)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업무처리 관행 및 업무 분장의 개편, 법원행정처 내부의 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 방안과 2) 법원행정처 근무자에 대한 인사배치의 투명한 기준 마련과 법원행정처 경력자들에 대한 이후 우대 인사의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의 권력기관화 되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법관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법행정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결

우리는 이번 사태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심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게 내려진 사법 불신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사법부가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적 쇄신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혁신과 개혁을 마다하지 않기를 바란다. ■